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

(정준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3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1월 24일
발 의 자: 정준호 의원(1명)
찬 성 자: 김 경,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춘곤, 박승진,
박유진, 서상열, 송도호,
아이수루, 유정인, 유정희,
이상훈,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임종국, 장태용,
홍국표, 황철규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와 진료비 공시제(진료비 현황 조사·분석·공개)가 시행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느끼는 진료비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알권리 향상과 사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정책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통한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취약계층의 진료비 지원 및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게시 관련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반려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함 (안 제11조).

라.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게시·표시 및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사전 선택 기회 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내 동물병원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반려동물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 예측가능성, 투명성을 높여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비용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대한수의사회,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동물의 진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진료비 부담의 가중 또는 완화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분석·계량화 등의 수단·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취약계층 지원 내용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2.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대상 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진료비 등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진료비 등 지원방법)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2조제4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시장은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진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 시장은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과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 동물병원과 협력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 무료 검진 캠페인 및 이에 대한 지원 사업
2. 예방접종 및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자료에 대한 홍보) 시장은 「수의사법」 제20조 및 제20조의4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조사·분석 결과에 관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알기 쉽도록 그 정보에 대한 접근방법(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시스템 등) 또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정보를 발췌·정리한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모범 동물병원 지정 등) ① 시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을 모범 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수의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게시의무가 부과된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넘어 자발적으로 진료비용을 추가 게시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해당 동물병원에 대한 홍보
3.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동물진료업의 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모범 동물병원의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④ 시장은 모범 동물병원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사항과 지원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해지 사유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공표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공표와 홍보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취약계층 지원 내용 등) 및 제9조(진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동물보호과)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년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비 게시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4조 및 제9조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붙임1)	577,400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안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1] 2024년 서울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1. ~ 12. (연례반복)
- 사업대상 :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
- 주요내용
 -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게 필수 의료(기초검진, 예방접종 등) 및 선택(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동물의료 지원
 -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지정하여 병원 입원, 명절, 휴가철 등 사회적 약자의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 위탁서비스를 지원
 - 반려동물의 사체와 동행하여 화장업체로 이동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 대행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561,900천원

□ 2024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61,90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운영 및 사업홍보	2024.01~2024.12	7,00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운영 및 사업홍보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운영	2024.01~2024.12	9,000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운영	2024.01~2024.12	500,000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2024.01~2024.12	45,900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